###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이용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및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책이음서 비스 회원 관리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의 시설운영 및 자료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료실 설치)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연속간행물실·특성화자료실, 어린이실 등을 설치·운영한다.

제3조 (열람실 및 문화교실 설치) 열람실 및 문화교실을 설치 · 운영한다.

제4조 (이용시간) 도서관(자료실 포함) 이용시간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수 있다.

제5조 (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매월 셋째·넷째 월요일
- ② 토・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공휴일인 토・일요일
- ③ 자료의 정리, 장서점검 및 보수공사 그 밖의 사유로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다만, 이 경우에도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관일 7일전까지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이용) 도서관 이용은 무료이나, 일부시설물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도서관자료, 비품 및 기타 시설에 낙서 또는 파손・훼손 금지
- ② 도서관자료, 비품 등 부정 반출 금지
- ③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복장 금지 및 금연
- ④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 ⑤ 보호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의 출입 금지

제8조 (제재) 이용자는 도서관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 도서관장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① 제7조의 각호를 위반하는 경우
- ② 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집회, 연회, 설문조사, 촬영, 게시물부착 또는 상행위, 선전 등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 ③ 직원의 도서관 이용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 ④ 정신질환 또는 음주, 노숙, 약물복용 등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⑤ 기타 도서관의 질서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 (변상) ① 도서관 비품 및 기타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② 변상은 동일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인 경우에는 현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 ③ 제②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하였을 경우에는 도서관장은 동일한 물품의 구입 또는 시설물 보수에 사용한다.

제10조 (자료관리) 장서점검은 원활한 자료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 (자료열람) ① 자료열람을 원하는 자는 지정된 장소에 소지품을 보관하고 입실한다. 귀중품은 본인이 소지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 ②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선택・열람한다.
  - ③ 서고자료의 열람은 해당 자료실에 신청한다.
  - 단, 서고자료 열람은 업무 종료 30분 전까지 해당 자료실에 신청한다.

### 제12조(자료복사 및 출력)

- ① 복사 및 프린터 출력
- 1. 자율복사기 및 프린터를 설치·운영하며, 도서관 소장 자료로서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습 또는 연구 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복사 및 출력 할수 있다.
- 2. 자료복사는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인 1부에 한하며, 위반 시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② 이용시간
- 1. 복사 및 프린터 이용시간은 자료실 이용시간 내로 한다.
- ③ 복사제한
- 1. 복사에 의하여 원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 2. 기타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단, 공무수행 상 또는 법률에 의한 증거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할 수 있다.)
- ④ 설치 및 관리 위탁
- 1. 도서관내에 설치된 이용자용 복사기와 프린터의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 한다.
- 2. 복사기·프린터의 관리를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위탁관리자')은 행정 재산(복사실)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사용료 징수
- 1.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규격(단위 mm)	1매당 복사료	1매당 프린터 출력료	비고
B4(364×257)	40원	×	※ 복사카드 사용
A4(210×297)	30원	50원	※ 국사가르 사용

- ※ 원문DB 출력요금은 1면당 50원+저작권료, 전송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2. 사용료 징수는 위탁관리자가 담당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위탁관리자의 수익으로 한다.
- 3. 위탁관리자는 복사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료를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원자격) ① 회원의 종류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 1. 개인회원은 책이음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2. 단체회원은 부산시내에서 10인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관리책임자 1인을 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②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한 자로 한다. (단, 2,3,4호 해당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2. 부산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자

- 3.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자
- 4.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등록자
- 5. 타 지역 책이음회원인 자
-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③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회원으로 본인인증 및 책이음회원 등록절차를 수행하고, 책이음이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 2. 14세 미만 가입 희망자는 보호자와의 관계 확인(책이음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절차를 거쳐 이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가진다.
- 3. 장애인은 대리인(직계가족 및 시설 대리인)을 지정하여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4조 (대출자 정보 공유) ① 책이음회원은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 대출 회원에 대한 인적사항, 대출권수 및 연체여부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 ② 책이음이용증은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
  - ③ 책이음회원 정보는 책이음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활용 할 수 없다.
- **제15조 (회원의 의무)** ① 책이음이용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부모가 직계가족임을 입증한 후 14세 미만 자녀를 대신하여 대출할 경우
  - 2. 장애인 회원 가입 시, 대리인으로 등록한 경우
  -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책이음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 ③ 책이음이용증 및 대출도서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제16조(대출) ① 회원이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책이음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책이음 서비스에 연체된 자료가 없어야 한다.
  - ② 책이음이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책이음이용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 발급한다.
  - ③ 개인회원의 대출 자료수는 도서관 당 5권(통합20권) 이내로 한다.

- ④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⑤ 대출기간은 연장 할 수 없으며, 동일 자료의 재대출은 반납 후 3일이 경과한 다음 가능하다.
- ⑥ 단체회원 및 책바다, 책나래회원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17조(희망도서 신청) 이용자는 도서관 소장자료 중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책이음회원에 한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1인 1주 2권 이내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청대상 자료는 단행본에 한정한다.
- ③ 기타 희망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은 부전도서관 장서관리규정에 따라 자료선정기준에 준한다.
- 제18조 (상호대차) ①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약기관 상호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대출할 수 있다.
  - ② 상호대차 신청 자료에 대한 제공 여부는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에 불응할 수 있다.

제19조 (대출제한자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 ① 참고자료, 연속간행물, 디지털자료, 금융자료(특성화자료실)
- ② 시중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자료 및 귀중자료
- ③ 기타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20조 (반납독촉) 회원이 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 및 우편독촉장을 발송 방문 수거 할 수 있다.

- 제21조 (대출제재) ① 대출한 자료를 연체했을 시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 ② ①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대출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부산광역시립공공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받을 수 없다.
- 제22조 (자료변상) ① 열람 또는 대출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자는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자료(서명, 저자명, 출판사 등)로 현품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 시가로 현금 변상한다.

③ 변상금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세입 조치한다.

제23조 (대출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① 탈퇴를 희망한 자
- ② 회원등록 후 2년 이상 대출실적이 없는 자
- ③ 자료의 분실·훼손, 장기 연체(1년 이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
- ④ 책이음이용증을 자료대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⑤ 책이음이용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한 자 (단, 15조 1항의 예외규정에 준할시 제외)
- ⑥ 기타 도서관장이 회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제24조(회수불능 자료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가 장기간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이용불능자료'로 분류, 도서관 자료선정협의회에 회부하여 부전도서관 장서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①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파악이 안 되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
- ② 제20조에 의한 반납독촉 이후에도 1년 이상 회수가 안 되는 자료

제25조 (자료의 대출시간) 자료의 대출시간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과 같다.

**제26조 (디지털실 및 연속간행물실 이용)** ① 이용대상은 우리도서관 이용자(중학생 이상)로 한다.

- ② 자료의 범위는 DVD, 컴퓨터에 탑재된 각종 소프트웨어 등, 신문, 잡지 기타
- ③ 자료의 이용은 폐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기기의 사용은 도서관 소장자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 ④ 개인에 대한 자료 대출은 하지 않으며 단, 관내 교육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도서관장의 승인 후 1주일간 대출할 수 있다.
- ⑤ PC이용은 1인 1일 최대 2시간으로 한다. (노트북 코너 이용은 1일 최대 3시간)

- ⑥ DVD 및 영상자료는 1인 1회 1종으로 한다.
- ⑦ ⑥의 이용자는 자료 이용 시 비치된 신청서 제출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⑧ 자료 및 기기의 변상은 이용 중 사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파손 시 동일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⑨ 소지품은 물품보관함에 보관 한 후 입장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별표 1과 같다.
- ⑩ 다음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 1. 음란, 도박과 같은 불건전한 사이트 접속
- 2. 채팅, 게임 및 장시간의 메신저 사용 등과 같은 행위
- 3. PC 이용시 프로그램의 무단 설치 및 삭제 또는 변경
- 4. 자료실 사용 목적을 벗어난 행위 (개인공부, 수면 등)
- 5. 이용 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혹은 양도하는 행위
- 6. 기타 사회 통념상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제27조 (규정 외 사항) 본 내부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및 부산광역시립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회원 관리 규정에 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독서회 운영 규정

#### 제1절 학생 독서회

제1조(목적) 독서에 관심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독서 및 상호협력적인 독서 생활을 통해 독서의 효과를 높이고 올바른 인격 형성을 돕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찬우물독서회(초등), 책넝쿨독서회(중등)로 칭한다.

제3조(운영) 본회는 각호와 같은 활동을 추진한다.

- ① 독서토론회
- ② 독서발표회
- ③ 독후활동
- ④ 독서를 위한 친목도모 및 기타활동

제4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독서회명	자격	인원	
찬우물독서회	초등4~6학년	20명 내외	
책넝쿨독서회	중등1~3학년	15명 내외	

#### 제5조(회원자격)

- ① 어린이실에 비치된 독서회 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 후 제출함으로써 그자격을 가진다.
- ② 본 회의 회원가입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6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①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 ② 정기회에 6회 이상 불참할 경우(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제외)
- ③ 기타 독서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제7조(운영) 학생독서회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준칙 : 독서회 운영은 담당사서 지도하에 자발적으로 운영한다.

② 모임 : 월1회 정기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소 : 부전도서관

#### 제2절 일반 독서회

제1조(목적) 책읽기와 독서토론회를 통하여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하며, 나아가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평생학습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명칭) 본 일반 독서회의 명칭은 이목 독서회와 부산직장 독서회로 한다.

제3조(운영) 본회는 각호와 같은 활동을 추진한다.

- ① 독서토론회
- ② 회지발간
- ③ 친목도모 및 기타 활동

#### 제4조(회원자격)

- ① 부산 시내에 거주하면서 책읽기와 독서토론에 관심있는 일반인 및 직장인으로 독서회 가입신청서[별지 제2호]를 제출함으로써 회원자격을 가진다.
- ② 본 회의 회원가입은 수시로 할 수 있다.
- ③ 회원 수는 15명 내외로 한다.

### 제5조(자격상실 및 제한)

- ①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 ② 정기회에 6회 이상 불참할 경우
- ③ 기타 독서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 제6조(임원 구성)

- ①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임원을 둔다.
- ② 임원의 구성은 다음을 둘 수 있다.
- 1. 회장 1명
- 2. 총무 1명
-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정기회 및 총회)

- ① 본 회는 매월 1회 정기회를 가진다.
- ② 본 회는 회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기회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총회는 연 1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독서회 가입 신청서

# 찬우물(초등), 책넝쿨(중등)

이름	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학교	학반	-
E-mail	@	

- 1. 상기 본인은 귀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 )독서회에 가입하여, 열심히 활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 2. 독서회 가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확인)

(초등)학부모 (확인)

#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독서회 가입 신청서 일반(이목, 부산직장)독서회

	름:							
□ 주	소 :							
□ 전화	화번호 :							
	메일:							
상기	] 본인은	귀 도서	관에서 :	우영하는	일반(	이목, 부석	산직장)	독서회에
가입하	·기를 신청	정합니다.						
※ 독 <i>/</i>	서회 가입	신청을 .	위한 개인	]정보 수	-집 및	이용에	동의합	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장 귀하

(서명)

신청자 :

### 직장(단체)문고 운영 규정

제1조(목적)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학교, 직장 및 단체 구성원의 독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단체문고라 함은(이하 '문고'라 한다) 학교, 직장 및 단체에 일정한 기간 동안 자료를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10인 이상의 회원을 둔 학교, 직장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가입자격 및 절차) ① 문고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직장(단체)문고 가입신청서 [별지 제1호] 및 직장(단체)문고회원 명단[별지 제2호], 대출도서관리서[별지 제3호] 를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 ② 이용기한은 해당 기관의 별도 탈퇴 요청이 없는 한 연장 운영한다.
- 제5조(대출 방법) ① 대출은 목록에 의하여 일괄 대여하고 일괄 회수하며, 도서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대출한다.
  - ②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대출자료 목록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대출 권수 및 기간) ① 대출 권수는 1회 200권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재 대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회 1개월 이내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무) 문고를 이용하는 학교, 직장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야 한다.

- ① 대출받은 자료가 널리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대출반납에 따른 제 규정 준수 및 문고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 ③ 문고 담당자는 대출자료가 분실, 오손,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④ 대출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⑤ 신청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8조(변상)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오손·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문고의 철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문고를 철회할 수 있다.

- ① 문고철회를 희망할 경우
- ② 문고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거나 그 운영이 부실할 경우
- ③ 분실 및 오손 · 훼손 자료를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 ④ 기타 도서관 운영상 문고철회가 불가피할 경우

제10조(회수불능 자료처리) 회수불능 자료처리는 부전도서관 이용규정 제24조 회수불능 자료처리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직장(단체)문고 가입신청서					
직장명					
주 소					
대표자	(인)	전화번호			
가입회원수	명	담당자 (연락처)			

본 단체는 직원(및 구성원)의 독서생활화를 위해 귀 도서관의 직장(단체)문고에 가입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장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장 귀하

# 직장(단체)문고 규정 요약

- 1. 문고자료는 목록에 따라 일괄 대출 및 반납합니다.
- 2. 대출권수는 200권 이내, 대출기간은 2개월 이내입니다.
- 3. 대출한 도서의 반납일은 잘 지킵니다.
- 4. 대출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동일도서로 변상하고, 현품변상이 불가능 할 때는 현 시가로 변상합니다.
- 5. 문고의 취지에 위배되거나 그 운영이 부실할 때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

# )직장(단체)문고회원 명단

순번	성 명	주 소	연락처(휴대폰)	비고

# 대출도서관리서

귀 직장(단체)에서 대출받은 도서에 대하여 반납 일자를 잘 지키고,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도서나 현재 시가로 변상하겠습니다.

- 1. 직장(단체)명:
- 2. 대 표 자 :
- 3. 주 소:
- 4. 전화번호 :

년 월 일

독서회담당자: (인)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장 귀하

( 별표 1 )

# 부전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 시간

■ 도서관 개관시간 : 07:00 ~ 23:00

■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시간

구	자료실명		이용시간	
분	사표결정	월·토요일	화 ~ 금요일	일요일
1	디지털자료실·연속간행물실	09:00 ~ 18:00		
2	종합자료실	09:00 ~ 18:00	09:00 ~ 22:00	09:00 ~ 17:00
3	어린이실	09:00 ~ 18:00		27,000
4	열람실	07:00 ~ 23:00		